

주요국의 경쟁거래제도 운영

본 협회 조사부

미국

**독점금지국, 상세한 합병
심사에 대한
Process Initiative의
세부내용 발표**
- 문제점의 조기발견과 심사계획
의 교섭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 -

독점금지국은 웹사이트(web site)에 있어서 합병심사에 대한 Process Initiative의 상세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동 Initiative는 <http://www.usdoj.gov/atr>에 게재되어 있으며, 독점금지국이 합병·매수의 심사를 가장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광범위한 내부조사 및 분석의 결과이다.

Charles A. James 법무부 독점금지국장은 2001년 8월 시카고에서 행해진 미국 변호사협회의 제124회 연차회합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요를 설명하였다.

동 Initiative의 목적은 제안된 합병 등에 관한 중요한 법적, 경제적 및 사실에 관한 문제를 보다 조기에 발견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조사상의 발견을 촉진하며, 사실평가를 위

한 효과적인 process를 설정하는 데 있다. 또한 동 프로그램은 독점금지국이 심사인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가능토록 하며, 가능한 경우에는 계획을 제출한 당사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게 될 것이다.

이 Initiative는 독점금지국의 직원이 표준화된 절차 또는 모델을 이용하는 대신에 각각의 결합계획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심사계획을 책정하는 권한을 주고 이것을 장려하기 위하여 고안되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적극적인 참가와 협력이 요구되며, 이러한 당사자에게는 직원과 함께 중요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적극적인 process를 행할 것을 바라는 사람도 있으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바람직한 시책이며 기업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 Initiative는 당사자가 보다 명확,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방법으로 합병계획의 중요한 법적 문제에 도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라고 James는 말했다.

클레이튼법의 수정법인 Hart-Scott-Radino(HSR)법은 일정액 이상의 주식 또는 자산을 합병 또는 취득을 계획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과 법인에 대기기간을 두고 있다. 동 법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기업결합의 당사자는 결합을 완료하기 전에 당해 계

획의 신고를 행한 후 30일간을 대기하여야만 한다. 독점금지국이 30일의 대기기간 중에 「Second Request」라고 불리는 추가정보의 요구를 행한 경우, 당사자가 Second Request에 실질적으로 응하여 결정을 행할 때까지 추가적으로 30일의 대기기간을 두고 있다.

이 Initiative는 최초의 대기기간 중의 15일 또는 30일간, Second Request의 출발 및 Second Request 기간 후를 이용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 최초의 30일간의 대기기간 : 직원은 최초의 대기기간 중 15일 또는 30일간, 임의로 정보제공요구를 하고 당사자와 조기에 상담함으로써 가능한 한 적극적인 심사를 행하는 것을 장려 받게 된다.

- Second Request 기간 : 독점금지국의 직원은 최초의 15일 또는 30일간에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계획 및 심사목적에 비추어 가능한 한 상세하게 Second Request를 작성한다.

- Second Request 기간 후 : 이 Initiative는 직원이 당사자와 정기적인 협의를 행하고 적절한 상황에 따라 정보의 제공 및 심사상의 특정의 요구 준수에 대하여 당사자에 의한 구체적인 확약과 이에 대한 절차상의 결정을 확약하는 것을 장려 받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합병 등을 계획하는 당사자에 대하여 완전히 임의적인 것이다.

2001. 10. 12. 미 법무부 독점금지국 발표

미국 등 다수 국가의 독점금지당국자, 국제경쟁네트워크(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 ICN) 발족

- 새로운 국제적 장에서 독점금지제도상의 중요한 과제에 관한 국제적인 수렴화(Global Convergence)를 촉진시킴 -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 주요국의 독점금지당국자는 새로운 국제경쟁네트워크(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 ICN)의 발족을 공표하였다. ICN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선임(senior) 독점금지당국자가 독점금지정책의 수행에 있어 절차적 측면 및 실체적 측면을 수렴하기 위한 제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활동하는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네트워크는 금일, Fordham · 기업법연구소의 연차국제독점금지회의에서 발족되었다.

오늘날의 글로벌화 경제에 있어서는 복수의 관할권이 미치는 독점금지집행활동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차적 측면과 실체적 측면에서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쌍방의 독점금지당국간을 포함하여, 보다 강력하고 광범위한 기반을 가지는 국제적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현재

합병심사를 하고 있는 국가는 세계의 약 60여개국 이상이며 많은 사안이 복수국가에서 심사되고 있다. 그러므로 각국에서의 심사결과가 일치하지 않게 되거나 잠재적으로는 불필요한 절차적 부담을 강요하는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다. 국제카르텔도 또한 국경을 초월하여 많은 국가의 소비자에게 손해를 주고 있다.

Charles A. James 법무부 독점금지국장은 「국제적 반독점정책운영은 21세기형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 ICN은 산업계와 반독점정책운영진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매우 긴요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우리를 돋게 될 것이다. ICN의 발족은 실체적 측면과 절차적 측면에서의 중요한 반독점정책 운영의 과제에 대한 공통의 기반을 수립하여, 전세계적으로 경쟁을 확보하는 것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단계이다」라고 발언하였다.

ICN은 많은 국가의 반독점정책당국자가 세계의 소비자와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국제적 반독점정책운영을 보다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한 합의를 얻기 위하여 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개발도상국이 건전한 경제원리에 근거한 경쟁문화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ICN은 많은 국가당국이 경쟁, 조정 및 법집행을 세계의 소비자이익을 위하여 개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최근에 시장에 근거한 경쟁원리를 채용한 많은 국가에로의 경쟁문화의 확대를 지원할 것이다.」라고 Timothy J. Muris FTC위원장은 발언하였다.

ICN에 대한 처음의 개념은 국제경

쟁정책자문위원회(ICPAC)의 보고서로부터 나왔다. ICPAC는 1997년에 경제의 글로벌화가 국제적인 집행에 가져다주는 영향에 대처할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ICN은 올 여름 Charles A. James 법무부 독점금지국장과 Timothy J. Muris FTC위원장에 의해 지지되었다. 덧붙여 Mario Monti EU경쟁정책담당위원, Konrad von Finckenstein 캐나다 경쟁국장관, Fernando Sanchez Ugarte 멕시코 연방경쟁위원회 위원장을 포함, 많은 국가의 독점금지당국자에 의해 찬동되고 있다.

다음과 같은 국가가 ICN 최초 회의에서 확정될 때까지 임시 운영그룹으로서 활동한다 : 오스트리아, 캐나다, EU,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이태리, 일본, 한국, 멕시코, 남아프리카, 영국, 미국, 잠비아, 그리고 Konrad von Finckenstein가 잠정적인 운영위원회의 의장을 맡는다. 이러한 국가들은 처음부터 참여한 것이며 ICN의 발족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왔다. ICN 최초의 공식회의는 2002년 봄에 이태리 경쟁당국의 주최로 개최된다. 이 때에 운영위원회의 최종적인 구성원이 정해진다. 운영위원회는 진행중의 프로젝트 상황을 논의하거나 작업반(워킹 그룹)에서 딩해 Progress를 진척시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된다. 이태리에서의 최초 회의 후에는 순서대로 멕시코, 한국, 독일, 남아프리카 국가에서 연차회의가 개최된다.

James국장은 ICN은 상설사무국과 본부를 가진 「bricks and mortar」 조직은 아니며, 무역문제와 기타 경쟁과 관계없는 문제를 취급하는 것은 아니라

고 언급하고 있다. ICN은 「모든 반독점(all antitrust, all the time)」일 것으로 James 국장은 덧붙이고 있다. ICN은 또한 복수적인 관할에 미치는 합병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합병규제절차와 독점금지당국, 특히 신흥경제국에 있어서 독점금지당국의 경쟁창달의 역할에 대하여 초점을 두게 될 것이다.

ICN은 일차적으로는 정부의사결정 기관을 위해 조직되었지만 국제기관과 법률 및 경제독점금지 실무가, 사업가, 그리고 학자를 포함, 민간인으로부터의 공헌을 구할 것이다. ICN은 규칙제정과 의사결정을 행하는 것은 아니다. ICN이 특정권고에 대하여 합의에 도달한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는 것은 각국 정부의 자발성에 일임된다.

2001. 10. 25.

법무부 독점금지국·연방거래위원회 발표

Merberg는 역시 전체 220십만 달러에 달하는 원상회복금을 138개 피해자들에 지급하도록 명령받았다. 이를 피해자는 New York시의 시 관리 행정 서비스국(DCAS), Nassau County의 일반 서비스 부서(DGS), Newark 공립 학교, Odyssey 재활 센터, Manhattan 약물중독 재활센터, 그 외 수많은 비영리 사회봉사 단체들이 피해를 입었다. Merberg는 또한 정확하게 수정된 수익액을 제출하여야 하고, 200만 달러의 과징금과 이자, 추가 세금을 연방정부에 지불해야 한다. 연방독점금지국의 책임자인 법무 보좌관 Charles A. James는 이 기록적인 실형선고는 입찰담합과 사기적 입찰행위에 참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다른 사업자들에게 알리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01년 4월 5일 Merberg는 우유 제품과 냉동야채 등 DCAS, DGS, Newark 공립학교, Odyssey 재활센터와 관련된 다른 상품의 공급을 위한 입찰담합을 위해서 4개의 개별 계획에 참여하였음을 시인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추가적으로 그는 Odyssey 재활센터를 기만하여 100만 달러 이상의 리베이트와 사기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한 공모와 이 회사의 다른 고객들을 상대로 비밀 리베이트와 사기청구서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1000만 달러를 사취하기 위한 공모, 그 외 다양한 연방 조세법을 회피하기 위한 공모에 참가한 혐의를 인정하였다.

DCAS는 시립 병원이나 시립 교도소들을 운영하는 다른 New York시의 공립기관들을 대리하여 경쟁입찰을 붙이는 기관이다. Nassau County의

DGS는 Nassau County의 기관들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 위와 같은 사기적 행위에 의해 피해를 본 Jitney사의 고객들은 주로 New York에 위치한 비영리 사회복지기관들로써 중독자들의 치료기관이나 그 상위기관, 일일 치료기관, 교도소 사회적응 훈련기관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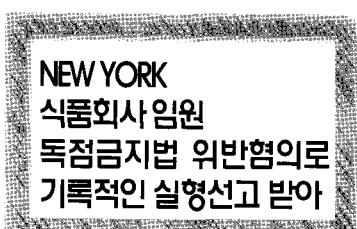
이 사건은 연방법무성 뉴욕지사가 FBI와 세금포탈범죄조사단의 도움을 받아 식품유통산업의 입찰담합, 뇌물, 세금포탈범죄 등을 계속적으로 추적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Merberg는 수사와 관련해 실형이 선고된 17번째 식품회사의 임원이다. 연방독점금지국은 이러한 입찰담합이 특히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입찰 과정에서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공공기관의 다른 입찰 부분에도 관련 수사를 진행중이다.

이와 같은 입찰담합은 셔먼법 제1조에 위반하는 경쟁사업자들간의 경쟁제한 합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셔먼법 제2조에 위반하는 독점화적 행위보다 더 위법한 것으로 판단을 받아 왔다.

2001. 11. 9. 미 연방법무부 보도자료

MICHIGAN의 기업과 임원, GENERAL MOTORS 입찰을 위한 계약 조작 혐의에 대해 사건 종결 청구

Michigan에 위치한 기계 제작 회사인 Sauger Industries Inc.와 동 기업의 사장인 John A. Baker는



11월 9일 연방법무부는 New York 시 전 식품회사 임원인 Melvyn Merberg가 수백만 달러의 입찰담합, 사기, 세금포탈을 읊모한 혐의로 63개 월이라는 기록적인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발표하였다. Manhattan 연방지방법원의 Laura Taylor Swain 판사는 연방법무부 독점금지국이 기소한 이 사건에 대해 가장 장기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Manhattan에 있는 식품유통업체인 Jitney사의 전 사장 Melvyn

General Motors의 자동화 계획의 일부에 필요한 기계제작 계약을 수주하기 위해 입찰담합을 공모하고 공모자들 상호간 입찰내용을 분담하기 위한 공모를 한 혐의를 시인하여 유죄를 인정했다고 연방법무부가 밝혔다.

2000년 3월 29일 시작되어 2001년 1월 종결된 조사에 따라 작성된 두 개의 기소내용에서 연방대배심은 Sauger와 Baker에게 1989년부터 1995년 4월까지 General Motors의 자동화 계획과 관련한 계약에서 자동화 기계제작을 위한 입찰담합을 주도한 혐의를 인정하고 이를 기소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Sauger와 Baker가 통신사기와 자금세탁을 실행한 혐의를 두 번째 기소사유로 인정하여 이를 정식 기소하였다.

Sauger는 Detroit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된 입찰담합 혐의에 대한 소송에서 11월 27일 유죄를 인정하였다. 원 기소장의 우편사기와 자금세탁에 참가하기 위한 공모 혐의는 Sauger에 대한 그의 유죄 인정에 따른 후속 재판후 기각될 것이다. 그 외에 Baker사는 우편사기에 참가하기 위해 공모한 혐의를 인정하였고, 원 기소장에 제기된 모든 다른 혐의는 이를 대체하는 다른 혐의에 대한 유죄가 선고된 후 기각될 것이다. 연방법무부 책임자인 Charles A. James 법무보좌관은 이를 공모자들은 기계제작 계약 수주와 관련된 경쟁을 거부함으로써 그들의 고객에게 경쟁이 주는 이익을 박탈하였다고 말했다.

협의내용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입찰담합과 우편사기를 통해 공모자들에게 특정 기계계약에 대한 입찰을 개별적으로 할당·책정하여, 허용된 특정

개발업자들만이 입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들은 낙찰자로 계획되지 않은 공모자들이 고의적으로 고액의 비경쟁적인 입찰가를 제시하여 입찰하도록 하여 공모자들이 낙찰자가 되도록 계획하였다. 공모의 일부분으로, 공모자들은 사기적 행위를 진행하기 위해 미국 우편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시도하였다.

Sauger는 서면법에 위반한 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고, 이 법은 기업에 대해서는 최고 1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Baker사는 18 U.S.C. 371조항에 위반한 혐의를 인정하였고, 이 규정은 최고 5년의 인신구속형과 최고 25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자에 대한 선고는 법원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양자의 유죄시인은 11월 27일 공식적으로 보도 되었고, 이 사건은 연방독점금지국 Cleveland 지국과 Detroit의 조직범죄 수사팀이 공동으로 수행한 조사에 의해 밝혀진 것이다. 그 외에 Detroit FBI 지국과 조세포탈 범죄수사팀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다.

2001. 11. 27. 미 연방법무부 보도자료

내용을 광고했다는 연방거래위원회의 제소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건을 종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연방거래위원회는 Utah주 Springville에 본사를 둔 Christopher Enterprises, Inc와 그의 주요 임원인 Norman Bacalla와 Ruth Christopher Bacalla가 자사의 캠프리 식품에 대한 안정성과 건강 효과에 대한 어떠한 실질적인 과학적 증거도 가지지 않았다고 혐의 사실을 설명하였다. 실제 연방거래위원회는 캠프리가 독성 알칼로이드를 가지고 있어서 의도적으로 섭취할 경우 심각한 긴장순상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피고들은 연방법원에 제기된 영구금지명령에 규정된 조항에 대해 합의함으로써, 내복용 캠프리 제품 혹은 개복된 상처치료를 위한 캠프리 상품의 판매 중지와 외용 캠프리 제품에 대해서는 경고문구를 제품에 삽입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들은 또한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10만 달러를 지불하고 제소된 상품의 안정성, 건강보조제로서 효용에 대한 광고를 중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연방거래위원회에 따르면, Christopher Enterprises 기업은 소비자들이 자사의 상품이 천식이나 관절염, 암, 감기, 근육경련, 포진, 전염병, 종풍, 소아미비, 결핵에 효험이 있다고 광고하고 그 외에 그 상품이 안전한 것임을 광고하였다. 2001년 7월 제기된 제소장에 따르면, Christopher Enterprises 기업은 캠프리를 포함한 다양한 상품을 제조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왔다. 이 회사는 그들의 상품을 우편이나 전화, 인터넷 그외 다른 유통망을 통해 미국 전역에 판매해 왔다. 피고들은 그들의 상품을 복용하거나 좌약으로 사용하거

**식물성 건강보조식품
판매자의 허위광고 혐의
인정으로 사건 종결 합의**

Utah에 위치한 이 기업은 식물성 첨가제인 캠프리가 광범위한 중증 질환과 건강상태에 치료 효과가 있고, 건강보조제로서 건강에 좋다는 근거 없는

나, 개복된 상처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광고하고 판매하여 왔다.

12월 6일 발표된 합의 제안문은 이 사건에 대한 소송을 종결하게 될 것이다. 합의문에 최종명령으로 삽입될 내용은, 피고들이 컴프리 제품을 포함하고 있는 상품이 중독성 알칼로이드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안전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피고들이 내복용 컴프리 제품, 죄약용 제품, 개복된 상처 치료제를 제조 판매하는 것을 금지 할 것이다. 피고들은 역시 외용제품의 상품 라벨이나 광고문구, 홍보전단에 다음과 같은 경고문을 포함하도록 요구될 것이다.

경고: 외용에만 사용할 것. 이 제품의 사용은 긴장에 치명적인 해를 줄 수 있다. 이 상품은 컴프리를 포함하고 있다. 컴프리는 중독성 알칼로이드 성분을 가지고 있고, 이 성분은 심각한 질병이나 사망을 유발할 수 있다. 이 제품은 내복용으로 섭취되거나 죄약용으로 혹은, 노출된 상처 부위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더 많은 정보를 참고하기 위해서는 식품 의약 관리청의 자료를 참조 할 것:
<http://vm.cfsan.fda.gov>

게다가 그 명령은 피고들이 제소장에서 문제가 된 특정한 건강에 대한 광고문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상품안전이나, 건강에 대한 이익, 건강유지, 어떤 식품의 효용, 약품, 디어트 보조제, 혹은 다른 건강관련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입증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 명령은 더 나아가 피고들이 그들 상품의 유통업자들에게 실증되지 않은 광고상의 주장이 법률에 위반하는 것이고, 피고들은 앞으로 기만적이고 실증되지 않은 광고 표현을 사용하

는 유통업자들과 거래를 중단할 것이라는 내용을 통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판결에 규정된 명령문은 또한 140만 달러의 벌금을 명령하고, 원고가 지급할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 10만 달러를 유예하였고, 만일 법원이 피고가 실질적인 불실표시를 하였거나 그들의 재정 상황서를 누락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판결을 다시 수정할 재수정 조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위원회는 영구금지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최종 합의안에 대한 심의를 하였고 그 결과는 5-0의 전원일치 찬성이었다. 이에 따라 최종 합의문의 내용은 Utah 미국 연방지방법원에 11월 29일 제출될 것이고, 이후 법원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다.

2001. 12. 6. 미 연방거래위원회 발표

연방거래위원회, Miami의 한 기업을 사기혐의로 기소

Miami에 본사를 둔 이 기업은 “Native American” 혹은 수공예팔찌라는 이름으로 장신구 조립을 도울 재택 근무자를 모집하는 광고를 해왔다. 연방거래위원회는 그 회사가 소비자들에게 장신구류의 제작에 따른 장래 이익을 오인시키고 있다는 혐의로 연방지방법원에 기소하였다. 연방거래 위원회의 기소에 따라 이 회사의 영업은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

National Crafters 회사와 그 소유자인 Thomas F. Diaz, Jr가 그 조립 작업이 쉽고 어떤 경험도 필요 없으며,

장차 조립업자는 매주 360달러에서 720달러 혹은 그 이상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광고를 해왔다. 연방거래위원회는 그들의 광고는 기만적 행위로서 허위적인 내용에 불과하다고 발표하였다. 연방거래위원회는 또한 피고들은 조립업자들이 장신구를 만드는데 필요로 하는 모든 공급품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만적인 광고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연방거래위원회는 법원에 소비자의 손해보상이 가능하도록 피고의 자산을 동결하고, 모든 기만적 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한 영구 금지명령을 내려줄 것을 청구하였다.

혐의내용을 구체화하는 기소장 안에서, 연방거래위원회는 National Crafters가 직접 미국 전역에 걸쳐 소비자들에게 호소하고, 광고 편지를 발송했으며, 가장 호황기 동안 동 기업의 작업을 보조할 장신구 조립업자들을 물색하도록 광고 했다고 밝혔다. 그 편지 내용안에서 피고들은 조립업자들이 쉽게 혹은 매주 잠정적으로 360달러부터 720달러 이상 수익을 올릴수 있다고 표시하였다. 피고들은 역시 가정에서 작업하는 조립업자들에게 팔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기구와 재료들을 공급할 것을 규정했었다. 그러나 조립업자가 되기 위해서 소비자들은 그 재료들과 작업도구들에 대한 배상보증금 명목으로 약 44달러를 지불하도록 요구되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실제로 가정에서 일하는 조립업자중 거의 어떤 소비자도 약속된 수익을 현실적으로 취득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연방거래위원회는 또한 피고들이 제공하는 재료는 질적·양적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조립업자들은 이것으로는 피고들의 지시서

와 주문서에 일치하는, 상업적으로 시장성이 있는 팔찌를 만들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제소장에 따르면 피고들은 다양한 이유로 가정에서 일하는 조립업자들이 그들에게 보낸 팔찌를 거부했고, 그 팔찌들이 피고의 주문서에 충족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완료된 그 작업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배상보증금을 환불해 주는 것을 거절했다.

특히 제소장은 National Crafters 사가 다음과 같은 불실표시를 통해 연방거래위원회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팔찌 제작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 총액은 합리적으로 예측될 수 있다. 그리고 조립업자는 상업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팔찌를 만들 수 있는 도구와 설명서, 재료들을 공급 받을 것이다.

위원회는 이러한 제소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제소장을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하는데 표결을 하였고 5-0으로 제소장을 제출하는데 합의하였다. 이 제소장은 Florida 연방지방법원 Miami 분국에 제출될 것이다. 연방독점금지국 남동부 지역 Atlanta 지역국이 조사를 주관하였고 Miami 경찰국과 미국 우편감시국의 도움을 받았다.

2001. 12. 5. 미 연방거래위원회 발표

유럽위원회는 10월 15일에 룩셈부르크에서 행해진 통신담당장관에 의한 EU각료이사회에서 지역우편서비스시장에서의 더 한층 자유화를 진행시킬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환영하였다. 합의에 기초하여 (Text는) 제2 독회를 위하여 유럽위원회에 제출된 내용에 따르면, 회원국은 2003년부터 추가적인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경쟁에 개방하는 것으로서 2006년부터 더 한층 시장점유율을 개방하는 것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유럽위원회는 전세계적인 서비스제공에 악영향이 드러나지 않는 한 2009년부터 우편서비스 역내시장의 완전자유화를 확인하는 제안을 2007년에 행하게 된다. 2001년 3월에 스톡홀름에서 행해진 유럽이사회에서는 새로운 우편지침이 금년말까지 합의되어 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Frits Bolkestein 역내시장담당위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금일 각료이사회에서 행해진 정치적 합의는 우편서비스역시장에 대하여 신중한 그리고 실질적인 경쟁으로의 개방을 도입하는 것이다. 우리는 유럽의 회의 완전한 관여를 확보하기 위하여 2009년 이후의 제도는 공통의 결정에 의해 합의되어질 새로운 제안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여 왔다. 본인은 현재, 우편서비스 역시장이 소비자를 위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유럽의회에서의 제2 독회에 기대를 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2000년 5월, 우편서비스에 있어서의 더 한층의 자유화를 제안하였다(IP/00/541 및 MEMO/00/29참조). 각료이사회에서 합의된 text는 단계적이며 관리된 자유화를 통하여 우편서비스 역시장의 완성을 진행하는 것과 빠져서는 안될 공동체

재산인 전세계적인 우편서비스제공을 확보하는 것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다. 현행 우편서비스지침(97/67/EC)의 전세계적 서비스에 관한 모든 조항은 존속한다.

각료이사회에서 행해진 합의에 따라 회원국은 다음과 같은 자유화를 진행시켜야 한다 :

- 2003년부터 100그램 이상의 편지 (또는 보통편지가격의 3배 이상의 것)
- 2006년부터 50그램 이상의 편지 (또는 보통편지가격의 2.5배 이상의 것)
- 2003년부터 국경을 넘나드는 모든 우편물(단, 전세계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 역내시장을 필요로 하는 회원국은 유보할 수 있다)

유럽위원회는 합의된 절충안에 따라 2009년의 우편시장의 완전자유화가 전세계적 서비스에 주는 영향을 각 회원국마다 평가하는 조사를 2006년 중에 끝마친다. 유럽위원회는 조사결과에 따라 적절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2009년의 우편시장 완전자유화를 확인하는 제안을 행하거나 또는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기타의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2001. 10. 16. 유럽위원회 발표

독일

**유럽위원회, 우편서비스
자유화에 관한
정치적 합의를 환영**

**카르텔청, Shell/DEA와
BP/Veba의 기업결합
의도에 경고**

연방카르텔청은 함부르크에 소재한 독일 Shell 유한회사(이하 Shell이라고 한다)와 DEA 석유주식회사(이하 DEA라고 한다), 그리고 독일 BP 주식회사(이하 BP라고 한다)와 Veba 석유주식회사(이하 Veba라고 한다) 간의 기업결합 계획은 국내의 석유, 제트연료 및 아스팔트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형성케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연방카르텔청은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는 기업결합을 허용할 수 없다고 당사 회사들에게 알렸다. 연방카르텔청장인 브게(Böge) 박사는 “Shell/DEA와 BP/Veba간의 기업결합은 필연적으로 반경쟁적인 시장구조를 유발할 것이고, 그 결과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것이다. 이에 당사 회사들은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려에 항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연방카르텔청의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기업결합은 관련시장에서 상위 3 사업자, 즉 Shell/DEA, BP/Aral 및 Esso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60%를 훨씬 넘게 하고, 또한 제1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를 상회함으로써,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법률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시장상황에서는 과점사업자가 기업결합 후에 다른 사업자와 실질적인 경쟁을 할 것이라고 믿을 수 없다고 연방카르텔청은 보고 있다. 여기서 품질경쟁은 실제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특히 연료는 물리적으로 동질적이며 표준화된 제품이기 때문이다. 시장의 투명성, 낮은 가격 탄력성 및 전체적인 수요력의 부족은 가격을 쉽게 움직이게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가격을 조정하면 다른 회사들도 이에 반응하여 유사

한 행동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2001. 12. 5. 독일 연방카르텔청 발표

일 본

공정거래위원회, 주식회사 곤도우조에 대한 건의 심결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년 3월 7일에 심판을 개시한 피심인 주식회사 곤도우조(이하 “피심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01년 12월 10일 피심인에 대하여 독점금지법 제54조의2제1항 규정에 근거하여 1076만엔의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피심인은 건설업 등을 행하는 자이다.

피심인은 타카하타 건설주식회사들과 공동으로 홋카이도 가미카와 지청이 지명 경쟁 입찰 방법에 의하여 발주한 농촌 정비 사업과 관련된 농업 토목 공사에 대하여 수주 예정자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수주 예정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의 이익에 반해 가미카와 지청 발주의 특정 농업 토목공사의 거래 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고, 이것은 독점금지법 제2조제6항에 규정된 부당한 거래제한에 해당하여 독점금지법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또한 독점금지법 제7조의2제1항에 규정한 용역의 대가와 관련된 행위를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9건의 계약이 과징금 산정의 대상이 되었으나, 피심인은 9건의 계약에 관계된 공사 중에서 과징금 산정의 대상이 되

는 것은 8건의 계약과 관련된 공사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심사관은 처음에는 9건의 계약이 과징금 산정의 대상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재조사를 통하여 과징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8건의 계약과 관련된 공사에 국한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8건의 계약과 관련된 공사의 대가인 3억 5899만 1848엔의 3%인 1076만엔(1만엔이하 절사)을 과징금으로 부과하였다.

그러나 피심인은 이러한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하여 독점금지법에 근거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및 심판에 관한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관 카지야마 생조, 금학 마사카즈 및 이코마 겐지가 제출한 사건 기록에 근거하여 이 심판관들로부터 제출된 심결안을 조사하여 위 3인의 심판관들이 부과한 과징금액은 정당하다고 심결하였다.

2001. 12. 13.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도쿄해상과 니치도화재, 경영 통합에 대하여 사전상담

공정거래위원회는 도쿄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도쿄해상」이라 한다) 및 니치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니치도화재」라고 한다)가 오는 2002년 4월 2일부터 계획하고 있는 지주회사 설립에 의한 경영 통합에 관한 사전 상담을 받아서 검토를 행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통합에 관한 당사 회사들의 설명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전제로 상기

통합은 독점금지법의 규정에 위반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회답을 하였다.

도쿄해상과 니치도화재는 손해보험 업계에 있어서 경영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화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내년에 주회사를 설립하고, 그 산하에 들어감으로써 경영통합을 실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공정위에 사전상담을 요청한 바 있었다.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검토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1. 일정한 거래분야에 관하여

손해보험 시장에는 손해보험 전체에 관하여 일정한 거래분야가 성립하는 외에, 제공된 보험의 상품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각 보험 종목마다(자동차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 및 해상·운송보험)에도 일정한 거래분야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2. 경쟁에 미치는 영향의 검토

(1) 아들 회사간의 통합이 일어나는 경우 국내 손해보험료 전체에 있어서 당사회사의 합산 점유율은 25% 정도가 되어, 그 순위는 제1위가 된다. 또 한 다른 손해보험회사가 합병을 예정하고 있어, 이를 고려한다면 상위 회사의 집중도는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상황은 인정된다.

① 당사회사 이외에 점유율이 약 10%~15% 남짓의 거대 손해보험 회사가 유력한 경쟁업자로서 여럿 존재한다는 점

② 생명보험계 손해보험회사, 외자계 손해보험회사 및 타업종계 손해보

험회사가 신규 참가하고 있다는 점

- ③ 보험료율의 자유화나 신규 참가가 행해짐에 따라, 가격 경쟁이 촉진됨과 동시에 손해보험회사 각 사가 보험 상품 개발 경쟁을 행하고 다양한 서비스 내용의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
- ④ 종래의 손해보험대리점 경유 보험 상품의 판매 이외에, 신규 참가입자를 중심으로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한 보험상품의 통신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2) 손해보험의 종목별로 보면, 자동차보험(당사회사의 합산 점유율 25%), 상해보험(20%), 화재보험(약 20%), 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약 25%), 배상책임보험(30%) 및 해상·운송보험(30%) 모두 제1위이지만, 각 손해보험 종목 분야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인정된다.

- ① 자동차보험 분야에서는 보험료율이 자유화되어 외자계 손해보험회사 및 타업종계 손해보험회사가 신규 참가함으로써 가격 경쟁이 촉진됨과 동시에 리스크 세분형 보험상품이나 인신 상해보험의 부가 등 담보 범위를 확대한 상품이 발매되는 등 다양한 보험상품의 제공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및 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관해서는 자동차보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러한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경쟁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는 점
- ② 상해보험 분야에서는 원래 외자계 손해보험회사가 적극적으로 판매활동을 하고 있으며, 생명보험회사 본체의 참가도 가능해짐으로써 경쟁의 촉진이 예상된다는 점

- ③ 화재보험 분야에서는 협동조합이

제공한 화재 공제가 화재보험에 거의 유사한 규모로 존재하고, 이것이 경쟁 압력이 되고 있다는 점

- ④ 배상책임보험 분야에서는 통합에 의한 점유율의 증가분이 적으며, 해상·운송보험과 마찬가지로 원래 산정회요율의 대상이 아니고, 활발한 가격 경쟁이 행해지고 있으며, 최근 고객 요구를 받아들인 신상품의 개발이 적극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점

- ⑤ 해상·운송보험 분야에서는 통합에 의한 점유율의 증가분이 적으며, 계약주체가 해운회사나 운송회사 등이고, 손해보험회사에 대하여 강한 교섭력을 가지고 있으며, 계약상대방을 변경한 것도 용이하다는 점과 해상보험 분야에서는 해외에 부호하는 사례도 많고, 외국의 보험회사들로부터의 경쟁 압력을 받고 있다는 점

- (3) 이상의 상황으로부터, 위의 1에서 획정한 어느 거래분야에 대해서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과거의 산정회요율은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 및 지진보험에 관하여, 손해보험료율 산정회 및 자동차보험료율 산정회가 보험료율을 산출하고, 행정청의 인가를 취득하고 정한 것이며, 산정회 회원인 손해보험회사는 이를 사용할 의무를 지고, 이는 독점금지법의 적용제외로 되어 있다. 그러나 산정회요율제도의 개혁에 의하여, 1998년 7월부터 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 및 지진보험을 제외하고, 각 사가 보험료율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행정청의 인가를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2001. 12. 14.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발표